

報道資料



보험개발원

제공일자	2006년 1월 9일
담당자	정태윤팀장
홍보담당	이정환선임

교통법규위반별 보험료차등화 개정(안) 마련

보험개발원(院長 : 김창수)은 「교통법규위반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(안)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.

동 개정(안)은 지난 '04.10월 변경신고된 제도가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, 언론 등 각계 의견을 들어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할증완화 검토를 요구('05.8.26)해 이루어진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할증대상 법규위반(6개항목) : 무면허/음주/뺑소니/신호위반/속도위반/중앙선침범
- 평가대상기간
 - 무면허/음주/뺑소니 : 과거 2년
 - 신호위반/속도위반/중앙선침범 : 과거 1년
- 할증율
 - 무면허/뺑소니 : 1건 20%
 - 음주운전 : 1건 10%, 2건이상 20%
 - 신호위반/속도위반/중앙선침범 : 2건~3건 5%, 4건이상 10%

동 개정(안)은 금융감독원의 신고수리 후 손해보험회사에 제시되며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 (끝)

주요 개정내용

구 분	현 행	'04.10 변경신고내용 ('06.9 시행예정)	개정(안)
평가대상 기간	2년	3년	○ 무면허음주,뺑소니 : 2년 ○ 신호위반,속도위반 중양선침범: 1년
할증대상 법규	○ 무면허 ○ 음주 ○ 뺑소니 ○ 신호위반 ○ 속도위반 ○ 중앙선침범 (6개 항목)	○ 무면허 ○ 음주 ○ 뺑소니 ○ 신호위반 ○ 속도위반 ○ 중앙선침범 ○ 앞지르기 ○ 철길위반 ○ 보행자보호 ○ 통행구분 ○ 개문발차 (11개 항목)	○ 무면허 ○ 음주 ○ 뺑소니 ○ 신호위반 ○ 속도위반 ○ 중앙선침범 (6개 항목)
할증률	5 ~ 10%	10 ~ 30%	5 ~ 20%
할증 방법	○ 2건이상 : 5~10% ○ 무면허,음주, 뺑소니 1건 : 10%	○ 1건 : 10% 2건 : 20% 3건이상 : 30% ○ 무면허, 뺑소니 1건 : 30%	○ 2건~3건 : 5% 4건이상 : 10% ○ 음주 1건 : 10% 2건이상 : 20% ○ 무면허, 뺑소니 1건 : 20%

○ 적용시기

- 개정(안) : 2007.9.1부터 시행
- 현행제도 : 2007.8.31까지 시행

※ 세부 내용은 별첨 참조

<별 첨>

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개정(안) 주요내용 및 효과

가. 세부 항목별 개정내용

할증대상법규

- 2004.10월 개정(안)에서는 할증대상법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법규로 확대하였으나,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에서 할증대상법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대로 유지(11개 항목 → 6개 항목)

할증방법

- 무면허·음주·뺑소니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 인상보다 신호·속도위반 및 중앙선침범시 보험료 할증률 인상에 대한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, 이의 할증률 최소화

➔ 신호·속도위반 및 중앙선침범은 2~3건 5%, 4건이상 10% 할증, 음주는 1건 10%, 2건이상 20% 할증, 무면허·뺑소니는 1건 20% 할증 (최고할증률: 20%)

□ 평가대상기간

○ 2004.10월 개정(안)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및 적용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나, 평가대상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할증대상규모가 급속히 커진다는 의견도 반영

➔ 평가대상기간을 무면허·음주·뺑소니는 2년, 신호·속도위반 및 중앙선침범은 1년으로 축소

□ 적용시기

○ '05.5월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급적용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(안) 발표후 실적 사용

➔ '06.5월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'07.9월 이후부터 적용하되, '07년은 직전 1년, '08년부터는 직전 2년 실적을 적용

□ 법규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공표

○ 보험가입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보험개발원이 매년 할증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법규준수자의 할인율을 정해 공표

나. 제도 개정시 효과

- 제도 개정 후 할증대상은 현재 4.8%→4.5%로 감소되고, 할인대상은 68.6%→79.5%로 대폭 증가 예상
- 신호·속도위반 및 중앙선침범의 평가대상기간이 2년→1년으로 줄어들어 할인대상 대폭 증가

제도 개정후 할증·할인대상 변경 현황

(단위 : 명, %)

구 분	할증대상	할인대상	기본계약
변경전 (구성비)	512,502 (4.8)	7,312,554 (68.6)	2,828,742 (26.6)
변경후 (구성비)	481,818 (4.5)	8,472,453 (79.5)	1,699,527 (16.0)

주) 2002.5월~2004.4월(2년간) 법규위반 통계를 기초로 분석 (끝)